[별표 13] <개정 1996.6.20> <u>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</u> (제48조관련)

| 화 약 류 구 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수 량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화 70 병    | 총 용 뇌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0만개    |
|           | 포경용뇌관·포경용화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3만개     |
|           | 실 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당 장약량 0.5그램이하 | 10만개    |
|           | 공포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개당 장약량 0.5그램이상 | 5만개     |
|           | 도폭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1,500미터 |
|           | 폭 발 천 공 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600개    |
|           | 미진동파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5,000개  |
|           | 꽃불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장 난 감 용 꽃 불 류   | 500kg   |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의 꽃 불 류     | 150kg   |
|           | 상 기 이 외 의 화 공 품 25k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25kg    |
| 비<br>고    | 이 표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화약류를 동시에 운반할 경우의 수량은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| 각 구분마다 화약류의 운반하려는 수량을 각각 당해 구분에 정한 수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| 량으로 나눈 수를 합한 수가 1이 되는 수량으로 한다.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|